

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 
제234회 제2차 정례회(2019. 12. 9.)

서울특별시 마포구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  
일부개정조례안

# 검 토 보 고 서



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 
복지도시위원회

# 서울특별시 마포구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

의안 번호	19-157
----------	--------

2019. 12. 9.  
전문위원 신준호

## 1. 제출경위

- 가. 제 출 자 : 마포구청장(환경과)
- 나. 제 출 일 : 2019. 11. 15.
- 다. 회 부 일 : 2019. 11. 18.

## 2. 제출이유

상위 법령의 제명 등의 개정에 따라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.

## 3. 주요내용

### 가. 상위 법령 제명 변경

- 「환경범죄의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」에서 「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」(안 제1조)
- 「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」→ 「물환경보전법」
- 「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」→ 「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」

나.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띄어쓰기 등 조문 정리

## 4. 참고사항

### 가. 관계법령

- 1) 「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」
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.

#### 다. 기타

- 1) 입법예고 : 2019. 9. 26.~ 10. 16.(의견 없음)
- 2) 행정규제 사전심사 : 해당사항 없음
- 3) 부패영향평가 : 원안동의
- 4) 성별영향분석평가 : 원안동의

### 5. 검토의견

#### 가. 조례 제정 배경

본 개정조례안은 환경감시 기능을 활성화하고 환경보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상위법령의 제명 변경에 따라 조문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.

#### 나. 주요 조문 검토

- 조례의 목적에서 상위법령의 근거인 「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」과 「물환경보전법」의 제명 변경 사항 반영(안 제1조)
- 환경오염행위 신고 접수 처리 근거인 상위법률 「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」로 제명 변경 반영(안 제4조~제5조)

#### 다. 종합 의견

-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근거법률의 제명 개정이 이루어진 사항을 반영한 사항으로 다소 시의성은 떨어지나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됨.
- 다만, 환경오염행위 신고 대상을 다양한 환경관련법에서 위반 행위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본 조례에서는 대기환경보전법, 물환경보전법, 폐기물관리법에 국한하여 정하고 있음은 다소 아쉬움이 있음.  
따라서, 관내 환경오염 위반 행위 현황을 파악하고 각종 환경관련법령<sup>1)</sup>의 근거를 가지고 위반행위 신고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이 필요해 보임.

1) 화학물질관리법,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, 토양환경보전법, 자연공원법, 하수도법 등

# [관 계 법 령]

## 「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」 (약칭: 환경범죄단속법 )

제15조(포상금) 환경법위반행위가 발각되기 전에 수사기관, 환경부장관, 지방환경관서의 장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)에게 신고한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.

## 「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

제10조(포상금의 지급) ① 삭제 <2013. 10. 22.>

② 법 제15조에 따라 범죄의 신고를 받은 수사기관, 환경부장관 및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그 사건의 개요를 관할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)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③ 법 제15조에 따라 범죄의 신고를 받거나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)은 그 신고내용이 환경법위반행위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.  
<개정 2013. 10. 22.>

④ 제3항에 따른 포상금은 300만원의 범위에서 지급하며, 포상금의 금액·지급시기 및 지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